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한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기상청장이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선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상청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과 기상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0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지진현장경보의 발령기준 등 지진경보체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진 정보전달 시스템의 연계 기관 대상 범위를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1) 지진관측경보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 2) 환경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변경 근거를 마련함

- 3) 지진관측경보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를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나 착오, 오기 등 명백한 오류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정함

나. 지진관측경보협의회 구성·운영(안 제3조의2 신설)

- 1) 지진관측경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함.
- 2)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 지진정보전달시스템 연계 기관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원자력 분야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함(안 제5조의4 신설).

라. 지진현장경보체제 운영기관 및 발령기준(안 제6조의2 신설)

- 1) 지진현장경보 운영 대상 기관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함.
- 2) 지진현장경보 발령기준은 지진관측소에서 예상 진도 VI 이상이 발생한 경우로 설정함.

마.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대행 업무로 구분하므로 위탁 업무에서 이를 삭제함(안 제1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조정하여”를 “종합·조정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의2, 제5조의4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관측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기상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산업통상자원부

5. 환경부

6. 국토교통부

7. 해양수산부

8. 원자력안전위원회

9. 그 밖에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⑤ 협의회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 ⑥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4(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 기관)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및 원자력 분야 등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의2(지진현장경보 발령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란 법 제6조에 따른 지진관측소에서 예상한 진도가 VI이

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2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 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② (생략)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 분야의 계획을 <u>종합·조정하여</u>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종합·조정하여</u> 법 제4조의2에 따른 <u>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u> 의 심의를 거쳐 ---.
<신 설>	④ 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⑤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u>기본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u> 2. <u>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u>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① <u>법 제4조제3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u>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① <u>법 제4조제5항</u> ----- ----- -----

말한다.

1. ~ 11. (생략)

② (생략)

<신설>

-----.

1.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지진관측경보협의회 구성·운영)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기상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산업통상자원부

5. 환경부

6. 국토교통부

7. 해양수산부

8. 원자력안전위원회

9. 그 밖에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신 설>

<신 설>

⑥ 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회에는 협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4(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 기관)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및 원자력 분야 등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의2(지진현장경보 발령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2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기상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략) 6. <u>법 제21조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u> 7. (생략) ③·④ (생략)	<u>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u> ② <u>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란 법 제6조에 따른 지진관측소에서 예상한 진도가 VI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u> 제12조(지진·지진해일·화산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연 락 처	(02) 2181 - 0765